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9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8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5.
- (3)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그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여행사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법이 의료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규정의 예외로서,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
치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 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 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신 설></u>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다만, 보험 대리점(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 는 사고·질병 등의 위험을 보상 해주는 보험의 계약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로 한정한다)이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자 등 록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 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현행	개정안
⑤ (생략)	<u>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하고 있음.¹⁾

-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는 2009년 1월 개정을 통하여 허용되었는데, 당시 법안을 제출한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되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밝힌 바 있음.²⁾

□ 당시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반 견해가 대립하였는데,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았음.

- 찬성입장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서비스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수지개선 등의 효과가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수입은 의료기관에 재투자되므로 내·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향상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병상 및 고급 의료기기 공급과잉으로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새로운 신시장·신수요 창출이 필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것이었음.
- 반면, 반대입장은, 외국인 환자에 한하여 유치활동을 허용하더라도 실제 내국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고, 국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은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외적 비용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음.

□ 특히, 보험업자에게까지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단계를 여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³⁾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보험업법」에 따른 보

2) 의안번호 1801519 정부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3) 당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민영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

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7조제4항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 중 「보험업법」 제2조제10호는 보험대리점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손해보험대리점에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여행사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27조제4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금지됨.

- 개정안은 이처럼 주된 업종은 여행사이지만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체결 대리를 위하여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의료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보험대리점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현행법이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금지하는 이유가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민간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맺음으로써 의료영리화로 연결될

중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는 방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민영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된 영업이 보험업이 아니면서 자신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취급하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까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란 ‘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며,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해 이들의 영업범위는 ‘간단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음.⁴⁾

□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

4) 「보험업법 시행령」 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 10. 28.>

1. 생명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화판매자등”이라 한다)로서 자신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2. 손해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3. 제3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제3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제3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4-4조의2(간단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 영 제2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간단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그 세부적인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의미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보험대리점도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경우까지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거나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대안반영폐기된 바 있음.⁵⁾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수정수용)

- 의료법에서 보험업종의 외국인 환자 유치제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사업자의 여행자보험을 포함한 의료관광통합상품 판매제한 해소, 외국인환자의 불편 해소, 글로벌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종 중 간단보험대리점에 한하여 허용을 검토할 수 있음.

5)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

[19052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을 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도록 함.

[1912121]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단, 숙박 알선과 항공권 구매 대행업무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2. 「보험업법」 제2조제8호의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2) 대한의사협회 (반대)

- 대형 보험자본의 우회적 의료시장 진입이나 보험과 여행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 유발 등 의료의 영리화 및 환자 유인·알선으로 인한 의료시장 교란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3)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 의료영리화 방지 등 입법 취지 훼손, 거대 플랫폼과 대형병원 결합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영 위축 우려, 가격 경쟁 심화로 의료신뢰도 위축 우려

4) 한국관광협회 (찬성)

- 의료관광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의료·관광 융복합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여

5) 국제의료협회 (수정수용)

-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관리·감독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4